

제2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산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한봉수 의원 외 4인

2. 제안이유

- 1988년 5월 1일 서초구가 자치단체로 분구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 중 현재까지 미이관된 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이관을 청원함.

3. 주요내용

가. 서초구청 청사부지 이관요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1376-3 소재 서초구청사 부지는 현재 서울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1988.1.1 신설된 5개구(서초, 송파, 노원, 양천, 중랑) 중 노원, 양천,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청사부지를 매입, 구유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송파구 청사부지는 체비지로써 최근 서울시에 의해 무상이관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에도 서초구청사 부지만 잡종재산이라 하여 서초구에 무상양여 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1978.11. 3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 후 1988.9.7 서울시 관재과에서 서초구 청사부지로 확정 통보하고 당시 서울시 예산으로 구청사를 건립,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조의 취지 및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무상양여를 요청하며,

나. 서초어린이집 부지 및 200m² 미만 잡종재산 이관

- 공공용 시설인 서초어린이집(방배동 1027-6, 대지 595.9m²)과 200m² 미만 잡종재산 등 총 16필지 1,809.8m²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관재 2400-1440, 87.6.10)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서초구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요청함.

다.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이관

- 서울시 도관 58421-1905(2003.8.1)호에 의거 체비지 무상이관 검토를 위하여 공공시설점유 체비지현황 보고(서초구 도정 58421-2348, 2003.8.22. 수신 : 서울시 도시관리과장)된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서초구 관내 체비지에 위치한 각 동사무소(방배2동, 반포2,3,4동) 및 반포1동 어린이집(반포동 703-1), 서초여성회관(방배3동 1023-10), 서초배수펌프장(서초동 1313-18)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된 체비지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신속한 무상이관을 요청하고,

라. 도로폭 20m미만 도로 이관

- 서초구가 자치구로 승격이후 수차에 걸쳐 20m 미만 도로를 이관받은 바 있으나 현재 20m 미만 도로로서 서초구에 이관되어야 할 도로 401필지 554,371.1m²를 이관 요청(서초구 건관 58150-2041, '03.5.13, 건관 58150-2957, '03.7.2 등 8회 요청, 수신 : 서울시 건설행정과장)한 바 있으나, 3필지(6,795.4m²)가 반려되어 398필지 547,575.7m²가 현재까지 미이관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조속히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제2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그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산중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한봉수 의원 외 4인

2. 제안이유

- 1988년 5월 1일 서초구가 자치단체로 분구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 중 현재까지 미이관된 재산에 대하여 조속한 이관을 청원함.

3. 주요내용

가. 서초구청 청사부지 이관요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1376-3 소재 서초구청사 부지는 현재 서울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1988.1.1 신설된 5개구(서초, 송파, 노원, 양천, 중랑) 중 노원, 양천, 중랑구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청사부지를 매입, 구유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송파구 청사부지는 체비지로써 최근 서울시에 의해 무상이관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에도 서초구청사 부지만 잡종재산이라 하여 서초구에 무상양여 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1978.11. 3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사업 결정고시 후 1988.9.7 서울시 관재과에서 서초구 청사부지로 확정 통보하고 당시 서울시 예산으로 구청사를 건립, 서초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조의 취지 및 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에 무상양여를 요청하며,

나. 서초어린이집 부지 및 200m² 미만 잡종재산 이관

- 공공용 시설인 서초어린이집(방배동 1027-6, 대지 595.9m²)과 200m² 미만 잡종재산 등 총 16필지 1,809.8m²가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 이를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한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관재 2400-1440, 87.6.10)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서초구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요청함.

다.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이관

- 서울시 도관 58421-1905(2003.8.1)호에 의거 체비지 무상이관 검토를 위하여 공공시설점유 체비지현황 보고(서초구 도정 58421-2348, 2003.8.22. 수신 : 서울시 도시관리과장)된 서울시 체비지인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서초구 관내 체비지에 위치한 각 동사무소(방배2동, 반포2,3,4동) 및 반포1동 어린이집(반포동 703-1), 서초여성회관(방배3동 1023-10), 서초배수펌프장(서초동 1313-18)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된 체비지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신속한 무상이관을 요청하고,

라. 도로폭 20m미만 도로 이관

- 서초구가 자치구로 승격이후 수차에 걸쳐 20m 미만 도로를 이관받은 바 있으나 현재 20m 미만 도로로서 서초구에 이관되어야 할 도로 401필지 554,371.1m²를 이관 요청(서초구 건관 58150-2041, '03.5.13, 건관 58150-2957, '03.7.2 등 8회 요청, 수신 : 서울시 건설행정과장)한 바 있으나, 3필지(6,795.4m²)가 반려되어 398필지 547,575.7m²가 현재까지 미이관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조속히 이관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마. 시설완료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관

- 시설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이 자치구 승격이후 일부 이관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관되지 않은 시설완료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원이 이관 요청되어 있는 상태로(반포동 63-2동 23건 41,375m²) 미이관되고 있어 조속한 이관을 청원 합니다.

4. 검토요지

가. 서초구청 청사 부지 이관

- 새로운 자치구의 신설에 따른 구의 청사설치 부지라는 점을 감안하고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및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 ('97.8.14 성동·도봉·금천)에 따라 총부지 16,618.4m²(5,027평) 중 청사부지 한도 13,223.2m²(4,000평)까지 무상양여 할 수 있음.

나. 서초어린이집 부지 및 200m² 미만 잡종재산 이관

-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87.6.10)에 따르면 '88.4.30일 이전에 서울시가 취득한 재산이 기 때문에 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유아원과 200m² 미만의 잡종재산은 서초구로 이관이 가능함.

다. 동사무소 및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 서초구에서 이관 요청한 체비지 등은 총 20필지 61,470.9m²(18,594.9평)인바, 체비지는 특별회계로 분류된 재산이기 때문에 자치구 이관대상 재산이 아니지만 이 중 서초구민회관, 방배2동사무소, 반포1동 어린이집 등 각종 공공시설이 설치된 체비지는 기 이관된 여타 자치구와 형평을 고려하고 또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에 따라 이관할 수 있으나 서초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등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지 47,214.7m²(14,282평)는 신중히 검토하여 무상양여하거나 서초구에서 매입토록 해야 할 것임.

라. 도로폭 20m 미만 도로 및 시설완료된 근린공원 등

- 서초구에서 이관 요청한 부지는 도로 398필지 547,575.7m²(165,641평)와 시설완료 전 공원 등 23필지 41,375m²로써 이중 구획정리사업 구역인 도로와 시설완료 근린공원은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모두 서초구로 이관되어야 하지만, 우면동 143의 2번지 등 잡종지 등 기업용 재산 1,632m²(494평)은 자치구 이관이 불가하므로 선별적으로 이관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임.

마. 결 론

- 위와 같이 시유재산 자치구 이관에 관한 청원내용을 종합검토해 보면 양재동 시민의 숲 환원과 별도로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위의 재산을 서초구로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 한편,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서초구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 공원은 서초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강남, 송파 주민 등 나아가서는 공원의 효용이 서울시민 모두에게 미치는 서울시민이 즐겨 찾아가는 공원이며, '87.6.10 시유재산 조정 당시 시유지가 잘못 분류되어 서초구로 이관된만큼, 본 청원에서 요구한 서초구 이관 재산과는 동시에 행 관계에 있거나 상계적상에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서로 상대방이 먼저 재산 이관해 주면 나도 상대방 재산을 이관하겠다는 시와 자치구간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또한 이 문제가 시와 서초구간의 소송으로 비화한다면 시민 전체에 대해 서로 협조하면서 봉사하는 시정의 입장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협상을 통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음으로써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울인 행정력 낭비를 빠른 시일내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